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4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권영진·우재준·이만희

김상훈 · 정희용 · 김승수

권영세 · 김도읍 · 조승환

윤재옥(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법률 제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국가기준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바에 따라 매년"을 "대상별 주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각각 "국가기준점표지 또는 지적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도"를 "제5항 및 제6항에도"로 한다.

⑥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준 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공공기준점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GNS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준 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GNSS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정보 (이하 "GNSS 측위보정정보"라 한다)를 측량 및 측량성과를 활용한 위치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 운항분야 및 항로표지분야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GNSS 측위보정정보를 구축 및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GNSS 정보관리체계를 구 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GNS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및 GNSS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
| 관리) ① (생 략) |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 | 2 |
| 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 | |
| 치 장소를 <u>국토교통부장관</u> , 관 | 국토교통부장관(국가 |
| 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 | <u>기준점은 제외한다)</u> |
| 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 |
|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 | |
| 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 |
|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 |
| 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 |
| 이전・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 | |
| 에도 같다. | |
| ③ 삭 제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 5 |
|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u>바에</u> | <u>대상</u> |
| <u>따라 매년</u> 관할 구역에 있는 <u>측</u> | 별 주기에 따라 국가 |
| <u>량기준점표지</u> 의 현황을 조사하 | 기준점표지 또는 지적기준점표 |
| 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 | <u>\(\) \</u> |
| 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 | |
| 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 | |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측량기준점표지</u>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신 설>

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 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설>

| 국가기준점표지 또는 지 | 적 |
|--------------|---|
| <u>기준점표지</u> | |
| | |

⑥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공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준 점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 우에도 같다.

| <u>(7)</u> | <u>제5항</u> | 및 | 제 <u>6항</u> | 에도 | |
|------------|------------|---|-------------|----|------|
| | | | | | |
| | | | | |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 가기준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 로 GNSS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정보(이하 "GNSS 측위 보정정보"라 한다)를 측량 및 측량성과를 활용한 위치정보 이 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 운항분야 및 항로표지분

야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GNSS 측위보정정보를 구축 및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GNSS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GNS 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및 GN SS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